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26-263호

2026년 제10차 궁능유적본부[창덕궁관리소] 공무직 등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

2026년도 궁능유적본부[창덕궁관리소] 공무직 등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30일
궁능유적본부장

□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

채용분야	직 종	최종 합격자 (응시번호)	예비합격대상자 (응시번호)
주간 안전관리원	공무직	(주간)안전관리-02	적격자 없음

□ 채용 예정일: 2026.11.06.(금)

※ 채용일은 관리소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

최종 합격자는 필요한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2026.11.05.(목)**창덕궁관리소 사무실**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채용 신체검사서 1부 [*2026년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도 가능]

※ 국민건강보험공단→건강iN→나의 건강관리→건강검진정보→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(직장 제출용)

②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('붙임' 양식)

③ 주민등록등본·초본 (**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**) 각 1부

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

⑤ 기본증명서 **상세**('일반 기본증명서' 상세) 1부

⑥ 사진(반명함판) 1매

⑦ 통장사본 1부(급여지급용 계좌)

※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 사본 1부

□ 공지사항

○ **다음의 경우에는 합격통보 및 채용 후에도 채용이 취소 됩니다.**

-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
-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건강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결격사유 확인 시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채용담당(02-3668-2333)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<붙임>
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공정채용기준 제25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**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**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20 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장 귀하